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3월 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03월 16일 회부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(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)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

나. 주요내용

- 가.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6조의2)
 -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규정
- 나.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7조의2)
 - 조사구역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을 규정
- 다.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10조의2)
 -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 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규정
- 라.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11조의2)
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 - O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정비로
 - O 새로 추가되는 주요내용은

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**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** 조사구역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

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

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**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**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.

- O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"을 "「주차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"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공영주차장관리자(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주차장관리자가 상주(常駐)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
- 2.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
- 3.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
- 4.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

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 도록 설정한다.

- 2.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,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 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.
- 3.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·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 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.
- 4.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
- 5.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0조제1항 중 "폭원"을 "너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"을 "시행규칙"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 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1. 노상주차장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 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2. 노외주차장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1조의2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적 및 휴게음식적
- 2. 지역특산물 판매장
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 차장(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
- 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소
- 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 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제12조 제4항 중 "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"을 "시행규칙"으로 한다.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주차장</u> 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「주차 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
<신 설>	제6조의2(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공영주차장관리자(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주차장관리자가 상주(常駐)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.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.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.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관리원의 표시
<신 설>	제7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 사 방법) 「주차장법 시행규 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 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 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

	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 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 록 설정한다. 2.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 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, 조 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 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 다. 3.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·노 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 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 이 경 우 부설주 차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. 4.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로 나누어 조사한다. 5.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 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
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<u>폭원</u> , 해당 주차장의 여 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	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
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「 <u>주차장법 시행규칙</u> 」 제3조제1항에 따른다.	- 너비,
③ (생 략)	

④ (생 략)	
	시 행규칙
	③ (현행과 같음)
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장애인 전용 주차구획
	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
	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
	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
	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
	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산
	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
	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
	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	1. 노상주차장
	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
	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
	한 면 이상
	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
	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
	3퍼센트 이상
	2. 노외주차장
	가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
	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
	3퍼센트 이상 제11조의2조(노외주차장의 부대
<u><신 설></u>	
	시설)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
	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
	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
	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
	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

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. 지역특산물 판매장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 1]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(배출 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하다) 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 정비업소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 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 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 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·③ (생략) ①·③ (생 략) ④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 ④ 시행규칙 -----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. 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 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 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-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.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 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 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로 하다.

 2.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

 (행정리를 말한다) 및 해당

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

 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로

 한다.